

구미시충조당(가칭)
관리 · 운영 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송조당(가칭)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5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송조당1관의 만장으로 인해 건립중인 구미시송조당(가칭)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이용 시민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탁재산현황
 - 시설명 : 구미시송조당(가칭)
 - 위치 : 옥성면 초곡리 산 7-2번지 일원
 - 시설규모 : 대지면적 9,900㎡, 건축면적 3,615.16㎡(지하1/지상3)
 - 사업비 : 7,500백만원(국3,675 도788 시3,038)
 - 사업기간 : 2013년~2017년(5년)
 - 안치기수 : 30,000기
- 위탁기간 : 5년 이내
 - ※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이나 장사시설의 설치·관리를 목적으로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사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※ 공설승조당(1관) 위탁현황

- 위 치 :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19(선산공원묘원내)
- 규 모
 - 대 지 : 1,580m²(477.95평)
 - 연 면 적 : 1,087m²(328.8평) 철근콘크리트 2층
 - 1층 : 663m²(200평) 관리실, 편의실, 납골당
 - 2층 : 424m²(128.8평) 납골당
 - 사 업 비 : 854백만원(국비562, 도비120, 시비172)
- 안치규모 : 10,170기
- 개 관 일 : 2000. 12. 20.
- 위탁운영자 : 재)선산공원묘원 정현기
- 직원현황

계	관리책임자	관리원	사무원	위생원	비고
4명	1명(남)	1명(남)	1명(남)	1명(여)	

- 위탁기간 : 2015. 12. 22 ~ 2018. 12. 21 (3년)
- 위탁운영사업비 : 연간 120백만원

3. 운영 소요예산 : 연 409,413천원 정도

(단위 : 천원)

계	인건비	경 비	일반관리비 등	비고
409,413	158,876	170,927	79,609	1관 포함

※ 상기 운영비는 「구미시공설승조당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및 사용료 원가계산 용역」 결과에 따른 추정치임.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
- 「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

5. 추진현황

○ 추진경과

- '12. 05월 : 1관 만장도래에 따른 2관 개설요청
- '12. 09월 : 공설승조당(2관)건립 기본계획 수립
- '13. 04월 : 승조당 2관 국고보조금 신청
- '13. 12월 : 기본설계용역 완료
- '15. 10월 : 실시설계용역 완료
- '15. 11월 : 구미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결정(변경)심의 의결
- '15. 12월 : 구미시 공설승조당(2관)건립 협약 및 공사계약
- '16. 01월 : 공사착공

○ 향후계획

- 공사 준공 : '17. 7월 예정
- 최종점검 후 개관 : '18년 상반기

재 산 현 황

구 분			건 물		토 지		비 고
			동 수	연면적(m²)	필 지	면적(m²)	
합 계			1	3,615.16			
공 유 재 산	행 정 재 산	공용재산					
		공공용재산	1	3,615.16			토지 지상권 설정
		기업용재산					
		보존용재산					
	일 반 재 산	행정재산외 모든 공유재산					

구미시송조당(가칭) 위탁시설 현황

○ 개요(층별)

구 분		면 적	용 도	비 고
지 하 층	지하 1층	209.38	기계실, 전기실	
	소 계	209.38		
지 상 층	지상 1층	1,106.30	로비, 참배실, 봉안실, 관리실, 휴게홀, 화장실	
	지상 2층	1,149.74	봉안실, 휴게실, 화장실	
	지상 3층	1,149.74	봉안실, 휴게실, 화장실	
	옥 탑 층	44.35		연면적 제외
	소 계	3,405.78		
합 계		3,615.16		

□ 조감도 및 현장사진

🌐 조감도



🌐 현장사진

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

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

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
□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소관 실·과·소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류 은 주
	담 당	권 혁 성
	담 당 자	정 옥 주 (480-5187)